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14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지정 유형의 통합 등 조달정책심의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도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달정책심의회 및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지정유형을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안 제2조, 제8조, 제9조)

- 혁신제품 지정 유형의 통합 반영 및 중복혜택 대상(건설신기술)의 지정가능 유형에서 제외(안 제2조)
- 혁신제품 지정대상을 사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예외사항을 정하여 신청공고에 반영(안 제2조의2)
- 혁신제품 내실화를 위해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성을 평가하는 2단계 평가를 도입(안 제9조제4항)
- 혁신제품 지정유형 통합에 따라 혁신성 인정 및 혁신정책 연계형 추천 제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안 제9조제8항)
- 총 3년(1+2년)의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나. 평가의 내실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등을 개선(안 제8조,

제6조, 제9조)

- 혁신성 인정 및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유형에 대한 평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평가기관으로 추가(안 제3조제2항)
- 평가의 공정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평가위원의 평가회피를 의무화하고, 평가위원 위촉 대상에 수요기관(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를 명시(안 제6조제3항, 제4항)
- 공공성이나 혁신성 불인정으로 탈락한 제품의 무분별한 재신청 방지를 위해 동일 제품 신청 가능 횟수를 4회로 제한(안 제8조제7항)
- 혁신제품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발표평가 의무화(안 제9조제4항)
- 신청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성 인정 제품(NET) 및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평가 및 혁신성평가를 생략(안 제9조제8항)

다. 2단계 평가의 도입 및 평가기관 추가 지정 반영,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을 위하여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수정(별표 1, 별지 1, 3~8, 11~16)

라.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미래전략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ksh120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3) 팩스 : (044) 201-55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전화 :
(044) 201-47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